

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(재협의)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,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업의 개요

가. 사업명 :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

* 남양주왕숙진건1·2 기업이전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

나.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전접읍, 진건읍, 퇴계원읍 일원

다. 사업규모 : 937만㎡(기업이전단지 : 72만㎡)

라. 시행자 : 경기도,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주택도시공사

2. 공개개요

가. 공개기간 : 2022. 12. 5. ~ 2022. 12. 19.(15일간)

나. 공개방법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lit.go.kr>)
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s://www.eiass.go.kr>)

다. 공개내용 :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3. 의견제출방법

가.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

나. 제출방법 : 불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

(idfra@korea.kr, Fax : 044-201-5659) 또는 환경영향평가

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(044-201-3356)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(055-922-386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